

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7-56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년 07월 27일

성 동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67-56
4. 정비구역의 면적 : 3,028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오기찬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성동구 마장동 767-56
7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6개월
8. 사업시행인가일 : 2023. 07. 21.
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대지면적	건폐율	용적률	연면적	최고높이	건축물의 주된 용도	층 수
3,028㎡	30.60%	248.55%	11,881.31㎡	39.70m	공동주택(아파트) 및 업무시설(오피스텔)	지하2층~ 지상13층

10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

공급구분	주택의 형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)			
				75㎡	81㎡A	81㎡B	74㎡
계		1	72	4	44	12	12
분양	공동주택 및 오피스텔	1	72	4	44	12	12

11. 의제사항 : 「빈집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5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
－ 「주택법」 제15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

－ 「건축법」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등

12. 기타 인가조건 및 관계서류는 성동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286-6576)에 비치
보관. 끝.